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5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 장종태·소병훈·정동영

박정현 · 김영환 · 문진석

김선민 · 김 윤 · 박용갑

조승래 · 송재봉 · 황정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, 점자(點字)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 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 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6조 및 제27조).

법률 제 호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보청기기"를 "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보청기기"를 각각 "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보청기기"를 "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"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4호 중 "보청기기"를 "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	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
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	①
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	
시설주는 휠체어, 점자(點字)	
안내책자, <u>보청기기</u> , 장애인용	<u>보청기기 및 보청기</u>
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	<u>기 보조장비</u>
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	
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	
한다.	
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, 점자	②
안내책자, <u>보청기기</u> , 장애인용	보청기기 및 보청
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	<u>기기 보조장비</u>
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	
설의 범위와 휠체어, 점자 안내	
책자, <u>보청기기</u> , 장애인용 쇼핑	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
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	조장비
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	
으로 정한다.	
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, 점자	③
안내책자, <u>보청기기</u> , 장애인용	<u>보청기기 및 보청</u>
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	<u>기기 보조장비</u>
를 원칙으로 하되, 수리 비용	
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	

있다.

제2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 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5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,
∥27조(과태료) ①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<u>보청기기 및</u>
보청기기 보조장비
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